

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춘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11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박춘선, 곽향기, 김규남,
김영옥, 김영철, 김재진,
김혜지, 남궁역, 박 석,
박유진, 신동원, 신복자,
유정인, 이종배, 이종태,
이효원, 정준호, 최윤희,
최호정, 황유정 의원(20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구미경, 김경훈,
김길영, 김동욱, 김용호,
김원중, 김원태, 김태수,
김형재, 김혜영, 남창진,
민병주, 박상혁, 박성연,
박영한, 박환희, 봉양순,
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
옥재은, 윤기섭, 윤종복,
이상욱, 이성배, 이영실,
이은림, 이종환, 이희원,
최민규, 허 훈, 홍국표
의원(33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위기에 처한 저출생 문제의 주요 대응 정책으로 난임지원정책이 수립되어 시술비용 지원 및 난임 우울증 심리상담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.
- 그러나 난임은 생식건강과 관계된 부분으로 영양과 운동 등 건강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사항으로, 이를 조례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건강증진 및 임신과 출생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7조 제1항 제4호 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로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지원 사업을 신설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모자보건법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4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7조(지원사업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